

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예비후보자자격심사위원회 제출 서류 서식별 작성요령 안내

1. 세금 납부 및 채납사항 작성 요령 : 1p
 2. 부동산 보유 현황 작성 요령 : 3p
 3. 가상자산 보유 현황 작성 요령 : 9p
- * 신청자들의 작성 편의를 위하여 3가지 서식의 작성요령을 별도로 안내드리오니 작성기준에 맞게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.

2025. 12. 23.

더불어
민주당

세금 납부 및 체납사항 작성요령

□ 작성예시

소득세·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납부·체납사항													
선거구명		(〇〇선거구)				성 명			홍길동 (洪吉童)				
(단위 : 천원)													
연 도	후보자 와의 관계	소 득 세			재 산 세			종합부동산세			계		
		납부 세액	당해연도체납 (완납일자)	현 체납액	납부 세액	당해연도체납 (완납일자)	현 체납액	납부 세액	당해연도체납 (완납일자)	현 체납액	납부 세액	체납액	현 체납액
2020 년도	부	신고거부	-	-							-	-	-
	본인	1,500	-	-							1,500	-	-
	배우자	-	-	-							-	-	-
	장남	200	-	-							200	-	-
	차남	-	-	-							-	-	-
	소 계	1,700	-	-							1,700	-	-
2021 년도	부	신고거부	-	-	신고거부	-	-	신고거부	-	-	-	-	-
	본인	1,500	-	-	380	-	-	200	-	-	2,080	-	-
	배우자	100	-	-	-	-	-	-	-	-	100	-	-
	장남	200	-	-	20	-	-	150	-	-	370	-	-
	차남	-	-	-	-	-	-	-	-	-	-	-	-
	소계	1,800	-	-	400	-	-	350	-	-	2,550	-	-
2022 년도	부	신고거부	-	-	신고거부	-	-	신고거부	-	-	-	-	-
	본인	1,500	-	-	380	-	-	200	-	-	2,080	-	-
	배우자	500	-	-	-	-	-	-	-	-	500	-	-
	장남	200	-	-	20	-	-	150	-	-	370	-	-
	차남	100	-	-	50	-	-	200	-	-	350	-	-
	소계	2,350	-	-	460	-	-	550	-	-	3,360	-	-
2023 년도	부	신고거부	-	-	신고거부	-	-	신고거부	-	-	-	-	-
	본인	1,500	-	-	380	-	-	200	-	-	2,080	-	-
	배우자	500	-	-	100	-	-	150	200	200	750	200	200
	장남	200	-	-	20	-	-	-	150 (15.4.30)	-	220	150 (15.4.30)	-
	차남	300	-	-	10	-	-	500	-	-	810	-	-
	소 계	2,500	-	-	510	-	-	850	350	200	4,460	350	200
2024 년도	부	신고거부	-	-	신고거부	-	-	신고거부	-	-	-	-	-
	본인	1,500	-	-	380	-	-	200	-	-	2,080	-	-
	배우자	500	-	-	100	-	-	150	200	200	750	200	200
	장남	200	-	-	20	-	-	-	150 (15.4.30)	-	220	150 (15.4.30)	-
	차남	300	-	-	10	-	-	500	-	-	810	-	-
	소 계	2,500	-	-	510	-	-	850	350	200	4,460	350	200
2025 년도	부				신고거부	-	-	신고거부	-	-	-	-	-
	본인				380	-	-	1,000	-	-	1,380	-	-
	배우자				-	-	-	-	-	-	-	-	
	장남				20	-	-	-	-	20	-	-	
	차남				-	-	-	-	-	-	-	-	
	소 계				400	-	-	1,000	-	-	1,400	-	-
합 계	부	신고거부	-	-	신고거부	-	-	신고거부	-	-	-	-	-
	본인	7,500	-	-	1,900	-	-	1,800	-	-	11,200	-	-
	배우자	1,100	-	-	100	-	-	150	200	200	1,350	200	200
	장남	1,000	-	-	100	-	-	450	150 (15.4.30)	-	1,550	150 (15.4.30)	-
	차남	400	-	-	60	-	-	700	-	-	1,160	-	-
	합 계	10,450	-	-	2,370	-	-	3,100	350	200	15,920	350	200

□ 작성요령 (소득세 등 납부채납사항)

○ “후보자와의 관계”란

- “본인”, “배우자”, “부” 또는 “모”, “장남 · 차남 · 3남”, “장녀 · 차녀 · 3녀” 등으로 기재하되, 혼인한 직계비속인 여자와 외증조부모, 외조부모, 외손자녀 및 외증손자녀는 제외함 (※ 직계비속은 출생순서에 의하여 기재함)

○ “세금 납부·채납액”란

- 납부 및 채납세액은 2020년부터 2025년까지 사이 발생한 금액 기재
- 후보자의 직계존비속 중 자신의 세금납부·채납에 관한 사항의 신고를 거부한 때에는 “납부세액”란에 “신고거부”라고 기재
- 금액은 백원 단위 이하는 절사하고 천원단위로 기재
- 해당연도 과세 분 중 채납액을 완납한 경우에는 ()에 완납 일자 기재
- 소득세의 경우 2020년부터 2024년까지의 귀속분을 기재
- 재산세의 경우 2021년부터 2025년까지의 귀속분을 기재

부동산보유현황 작성 요령

□ 부동산보유현황 작성 예시

부동산 소유 현황(기준일 25.12.31)												
현황	구분	관계		성명	소유주택수	□ 1주택 □ 일시적 2주택* □ 2주택 □ 3주택 □ 4주택 이상						
	본인	본인		홍길동								
	배우자	배우자										
	직계비속	자녀										
	직계존속											
구 분	권리자	권리종류	지목 (종류)	소재지·면적 등 권리명세	취득일	취득원인	취득가 (천원)	평가액 (천원)	용 도	거주자	거주형태	비고
토지 (소유권, 지상권, 전세권, 분양권)	본인	소유권	임야	○○광역시 ○○구 ○○동 ○○번지(200㎡)	2010.3.2	무상취득	5,000	7,000	주거용	본인	자가	
			전	○○도 ○○시 ○○면 ○○리 ○○번지 (300㎡)		매매	3,000		영업용	000에게 임대	전세	
			대지	○○도 ○○시 ○○면 ○○리 ○○번지 (300㎡)		분양	4,000		주상복합용	공실	월세	
	배우자		임야	○○광역시 ○○구 ○○동 ○○번지(500㎡)			2,000		상업용		친척집	
	자녀		전	○○도 ○○시 ○○면 ○○리 ○○번지 (300㎡)			4,000		공장용		기숙사	
소계							5,000					
건물 (소유권, 전세권, 분양권)	본인		주택	○○시 ○○구 ○○로 ○○ (건물165㎡중80/대지660㎡중 330)			200,000					
			임차권	○○시 ○○구 ○○로 ○○ (건물 60㎡)			350,000					
	배우자		빌딩	○○시 ○○구 ○○로 ○○ (건물165㎡중80/대지660㎡중 330)			150,000					
			아파트	○○시 ○○구 ○○로 ○○ (건물 120.00㎡)			400,000					
	자녀		오피스텔	○○시 ○○구 ○○로 ○○ (건물 95.00㎡)			200,000					
소계							215,000					
합계	본인						562,000					
	배우자						552,000					
	자녀						204,000					
	총계						750,000					

□ 부동산보유현황 개요

○ 후보자 : 더불어민주당 제9회 동시지방선거 예비후보자

○ 부동산신고(산정)기준일 : 2025. 12. 31 기준

○ 신고대상의 범위 : 본인 · 배우자 · 직계존비속 의 부동산

※ 혼인한 직계비속인 여자와 외증조부모, 외조부모, 외손자녀 및 외증손자녀는 제외

○ 신고대상부동산의 내용

- 부동산(토지 · 건물)의 소유권 · 지상권, 전세(임차)권, 사실상 소유권 및 분양권 등

○ 신고서 작성 시 유의사항

- 소명내용 기재 : 부동산 취득일자 · 취득원인 등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별도로 첨부할 수 있음

- 기재순서 : 신고부동산별로 본인 · 배우자 · 직계존비속의 순서로 작성함

- 고지거부 허가 요건 :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27조의2(재산등록 고지거부 허가요건)에 만족하는 직계존비속만 고지거부 허용

· 직계존속의 경우 : 나이, 취업 등 직업 유무, 보유재산의 정도 및 취업 사업 또는 재산을 통하여 발생하는 정기적인 소득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판단

· 직계비속의 경우 : 나이, 주민등록표상 별도 세대 구성 여부, 취업 등 직업 유무, 취업 등의 기간 및 취업 사업을 통하여 발생하는 정기적인 소득의 정도 등을 고려해 판단

- 허가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드러날 시 서류보완을 요구할 수 있음

○ 신고할 부동산이 없는 경우 : 신고할 부동산이 없는 경우에도 부동산소유현황을 제출 하여야 하며, “소재지 · 면적 등 권리명세”란에 “부동산소유사항 없음”으로 표시

□ 항목별 작성 요령 및 가이드(토지)

○ 신고대상

- 등기여부를 불문하고 재산의 소유권, 지상권, 전세(임차)권, 사실상의 소유권 또는 분양권
 - 매매계약체결의 경우
 - 매 도 : 현재 잔금이 완불되었더라도 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였으면 신고대상
 - 매 입 : 현재 중도금 지불하였으면 신고대상(계약금만 수수한 경우 등록 제외)
- ※ 대지상 건물이 축조된 경우는 본항목에 기재하지 않고 “건물”에 기재

○ “권리 종류” :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소유권 · 전세권(임차권) · 사실상 소유권 또는 분양권을 적으며, 미등기 권리는 “등기 미완료”라고 표시함

○ “지목 종류” : 전 · 답 · 과수원 · 목장용지 · 광천지 · 염전 · 대지 · 공장용지 · 임야 · 학교용지 · 주차장 · 주유소용지 · 창고용지 · 도로 · 철도용지 · 제방 · 하천 · 구거 · 유지 · 양어장 · 수도용지 · 공원 · 체육용지 · 유원지 · 종교용지 · 사적지 · 묘지 · 잡종지 등으로 표시함

※ 농지를 소유하고 있을 경우, 경작사실 확인서를 추가로 첨부

○ “소재지 · 면적 등 권리명세” : 토지 소재지(세부주소 포함)와 면적(m²) 기재

○ “취득일” : 매입일, 상속일, 증여일 등

○ “취득원인” : 목적, 방법(매입 · 상속 · 증여 등 여부), 상대방(매입 · 상속 · 증여의 상대방 및 상대방과의 관계) 등

○ “취득가격” : 무상취득의 경우에는 신고 대상 주택(분양권 포함)의 시가표준액을, 유상거래의 경우에는 신고 대상 주택(분양권 포함)의 구입가격 기재함

○ “평가액” : 평가액(개별공시지가, 공동주택공시가격, 지방세 시가표준액 등)과 실거래가격(각종 포털 및 시장에서 형성된 시세가 아닌, 실제 취득가격 또는 보상액을 의미) 중 높은금액으로 등록하되 둘 중 어느 하나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확인 가능한 가격으로 등록

- 「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관할 시·군·구에서 공시한 “개별공시지가×면적(m²)”을 기재하고, 확인 불가능한 경우 “실거래가격” 기재
 - ※ 분양권의 경우에는 신고 기준일까지 납부한 금액
 - ※ 공동소유토지인 경우에는 그 지분에 대한 가액을 기재함.
 - ※ 개별공시지가는 ‘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’ 통해 확인 가능
(<https://www.realtyprice.kr:447/notice/main/mainBody.htm>)
- 다만, 지상권·전세권(임차권)일 경우에는 계약서상의 “지료”, “전세보증금(임차보증금)”의 금액을 기재함.
- 토지를 매도한 경우 계약금·중도금 등 지불받은 금액을 현금·예금 등의 형태로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할 때에는 2중 계산을 막기 위하여 가액란에 가액을 기재하고 그 아래()안에 매매계약에 의하여 지불받은 금액을 감소표시(△)하여 기재

○ “용도” : 주거용, 영업용, 상업용, 공장용 등

○ “비고”

- 미등기권리 ⇒ “등기미필”이라고 표시함.
- 명의신탁 등으로 등기명의인이 아니면서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경우
⇒ “사실상 소유”라고 표시하고, “등기부상의 소유명의인 및 관계”를 기재함.
- 분양권의 경우 ⇒ “충분양가액”을 기재함.
- 공동소유토지일 경우 ⇒ “공유” 또는 “합유” 등으로 표시하고, 그 지분 기재
- 본인명의로 되어 있으나 실제 타인소유인 경우(문중재산 등) ⇒ 사실관계 기재
(본인명의로 된 재산이 문중재산일 경우 ⇒ “문중재산”이라고 표시함)
- 매매계약체결의 경우 ⇒ “계약관계”와 “수수한 총금액” 기재

□ 항목별 작성 요령 및 가이드(건물)

○ 신고대상 : “1. 토지”의 경우와 같음

- ※ 무허가 건물의 경우 허가 또는 등기여부에 관계없이 신고하여야 하며, 주택·상가 등 소유부동산에 전세권을 설정하게 하거나 소유부동산을 임대하고 받은 전세보증금 또는 임대보증금 등은 “채무”항목에 기재함.

○ “지목 종류” : “아파트”, “연립주택”, “단독주택”, “오피스텔”, “상가”, “빌딩”, “사무실”, “전세(임차)권” 등으로 표시함.

○ “소재지·면적 등 권리명세”

- 소재지(세부주소 포함)와 면적(대지 및 건물면적) 등을 기재함.
- 면적은 대지와 건물을 구분하여 m^2 (1평은 $3.3m^2$)로 환산하여 기재
- 본인·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거주하는 아파트 등의 동·호수는 기재 ×

○ “취득일” : 매입일, 상속일, 증여일 등

○ “취득원인” : 목적, 방법(매입·상속·증여 등 여부), 상대방(매입·상속·증여의 상대방 및 상대방과의 관계) 등

○ “취득가격” : 무상취득의 경우에는 신고 대상 주택(분양권 포함)의 시가표준액을, 유상거래의 경우에는 신고 대상 주택(분양권 포함)의 구입가격 기재함

○ “평가액” : 평가액(개별공시지가, 공동주택공시가격, 지방세 시가표준액 등)과 실거래가격(각종 포털 및 시장에서 형성된 시세가 아닌, 실제 취득가격 또는 보상액을 의미)중 높은금액으로 등록하되 둘 중 어느 하나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확인 가능한 가격으로 등록

- 주택은 「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할 시·군·구에서 공시한 공동주택가격 및 개별주택가격을 기재하고,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“실거래가격”을 기재함.

※ 분양권의 경우에는 신고기준일까지 납부한 금액

※ 공동소유 건물인 경우에는 그 지분에 대한 가액을 기재하여야 함

※ 평가액 기재 관련 사이트

구분	서비스명	주소
개별공시지가	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	https://www.realtyprice.kr:447/notice/main/mainBody.htm
실거래가격 확인	부동산 정보포털사이트	http://seereal.lh.or.kr

- 상가·빌딩·오피스텔, 그 밖의 건물의 가액은 대지가액과 건물가액을 별도 산정하여 합계하고,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“실거래가격”을 기재함.

가) 대지가액은 「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“개별공시지가×면적(m^2)”으로 산정함.

※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조(표준공시지가의 적용)에 따라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금액
나) 건물가액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고시하는 “공정가액(지방세과세
시가표준액 등)중 최고가액”으로 산정함.

- 전세권 · 임차권의 경우 계약서상의 “전세보증금”, “임차보증금” 금액 기재
- 무허가건물의 경우에는 매입가액 또는 사실상 거래가액을 기재함.
- 건물을 매도한 경우 계약금 · 중도금 등 지불받은 금액을 현금 · 예금 등의
형태로 보유한다고 신고할 때에는 이중계산을 막기 위하여 가액란에 가액
을 기재하고 그 아래 ()안에 매매계약에 의하여 지불받은 금액을 감소
표시(△)하여 기재함.

○ “용도” : 주택 · 상가 · 사무실 · 근린생활시설 · 오피스텔 등

○ “비고”

- 미등기권리 ⇒ “등기미필” 이라고 표시함.
- 명의신탁 등으로 등기명의인이 아니면서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경우
⇒ “사실상 소유”라고 표시하고, “등기부상의 소유명의인 및 관계”를 기재
- 분양권의 경우⇒ “충분양가액” 기재(예시 : 분양가액 00천원)
- 공동소유건물일 경우⇒ “공유” 또는 “합유” 등으로 표시하고, 그 지분 기재
- 본인명의로 되어 있으나 실제 타인소유인 경우(문중재산 등) ⇒ 사실관계 기재
(본인명의로 된 건물이 문중재산일 경우 ⇒ “문중재산”이라고 표시함)
- 무허가건물일 경우 ⇒ “무허가건물”이라고 표시함.

가상자산 보유 현황 작성 요령

□ 가상자산 보유현황 개요 작성 예시

가상자산 보유현황 개요(기준일 25.12.31)

후 보 신 청 자	성 명	홍길동	선거구명	시·도	선거구
	구 분		성 명		합 계
	본인 소유		홍길동		48,000,000원
	배우자 소유		홍길자		48,000원
	직계비속 소유				원
	직계존속 소유				
	(필요시 칸 늘려 작성)				원
	합 계		48,048,000원		

본인은 명예와 양심에 따라 성실하게 기재할 것을 서약하며
가상자산 보유현황을 위와 같이 작성·제출합니다.

2025년 12월 31일

본 인 홍길동 인

더불어민주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 귀중

□ 가상자산 보유 현황 개요

- “구분” : 본인, 배우자, 직계존속, 직계비속 중 기재
- “성명” : ‘구분’에 해당하는 사람 이름 기재, 해당하는 사람이 다수일 경우 칸 늘려 작성
* 예시 : 직계존속이 2명일 경우, 직계존속을 2칸으로 늘리고 성명 모두 기재
- “평가액” : 개인별로 모든 가상자산서비스에서 가진 가상자산의 자산의 총액 기재,
이 때 금액은 25년 12월 31일 가치의 금액으로 기재

□ 가상자산 상세 보유현황

- “후보자와 관계(성명)” : 본인, 배우자, 직계존속, 직계비속 중 기재 후 성명 기재
- “가상자산 서비스명” : 가상자산 거래를 운영하는 서비스 명 기재, 이때 서비스 명은
홈택스-조회/발급-기타조회-“가상자산 및 가상자산사업자 코드조회” 참조
- “가상자산 종류”
 - 1) “명칭” : 가상자산의 명칭 기재 / 예 : 비트코인
 - 2) “심볼” : 가상자산의 심볼 기재 / 예 : BTC
- “수량” : 기준일 시점으로 해당 심볼의 가상자산 보유 수량 기재
- “가액” : 기준일 시점으로 해당 심볼의 평가액 기재(※단가 아님 유의)
- “소계” : 개인별 보유 가상자산 ‘심볼’ 의 수량 합계와 평가액 합계를 기재
- “총계” : 구성원 전체의 ‘심볼’의 수량 합계와 평가액 합계를 기재

□ 기타사항

- 가상자산 종류
 - 1) 근거 법률 : 『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』 제2조제3호
 - 2) 가상자산 범위 :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
전자적 증표 (그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포함)
 - 3) 제외 대상 : 『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』 제2조제3호 각
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 * 전자화폐, 전자등록주식, 전자어음, 전자선하
증권 등

- 『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』 상 가상자산 제외 대상
 - 1) 화폐·재화·용역 등으로 교환될 수 없는 전자적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로서 발행인이 사용처와 그 용도를 제한한 것
 - 2) 『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』 제32조제1항제7호에 따른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·무형의 결과물
 - 3) 『전자금융거래법』 제2조제14호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같은 조 제15호에 따른 전자화폐
 - 4) 『주식·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』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자등록주식등
 - 5) 『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』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어음
 - 6) 『상법』 제862조에 따른 전자선하증권
 - 7) 『전자금융거래법』 제2조제16호에 따른 전자채권
 - 8) 발행자가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·용역의 수량을 기재하여 발행한 상품권 중 휴대폰 등 모바일기기에 저장되어 사용되는 상품권
 - 9) 그 밖에 금융정보분석원의 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

○ 금융정보분석원 의견

- 1) NFT (Non-fungible token, 대체 불가능 토큰) :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(FATF, Financial Action Task Force)에서 2021.10월 발간한 “Updated Guidance for a Risk-Based Approach to Virtual Assets and Virtual Asset Service Providers” 등을 고려할 때, 결제·투자 등의 수단으로 사용되는 NFT는 가상자산에 해당할 수 있음.
- 2) 스테이블코인 (Stablecoin) : 『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』 제2조제3호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 『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』 상 가상자산에 해당함. (단,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『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(대안)』에 따르면 한국은행이 발행한 전자적 형태의 화폐(소위, CBDC)는 명시적으로 가상자산의 예외로 규정)
- 3) 토큰증권 (STO, Security Token Offering) : 현재 토큰증권은 발행이 불가하고, 향후 제도개선을 통해 전자등록주식 등으로 발행될 예정이므로 『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』 상 가상자산에 해당하지 않을 예정임.